



#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21년 8월호

## Contents

### 회계정보

- 2021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 세무 및 법률정보

- 2021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10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mailto: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http://www.crowe.kr)

####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2021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2022년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 2021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2022년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입니다

[출처: 한국공인회계사회, 2021.6.30]

▣ 2021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2022년 재무제표 심사\* 중점 점검 회계이슈 선정

\* 최근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회사의 재무제표에 오류가 있는지 심사하여, 경미한 위반(과실)에 대해 수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경조치(경고,주의)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감리를 통해 엄중 조치 ('19.4.1. 시행)

- ①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및 주식공시 적정성
- ② 재고자산 회계처리 적정성
- ③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회계처리 적정성
- ④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인식 적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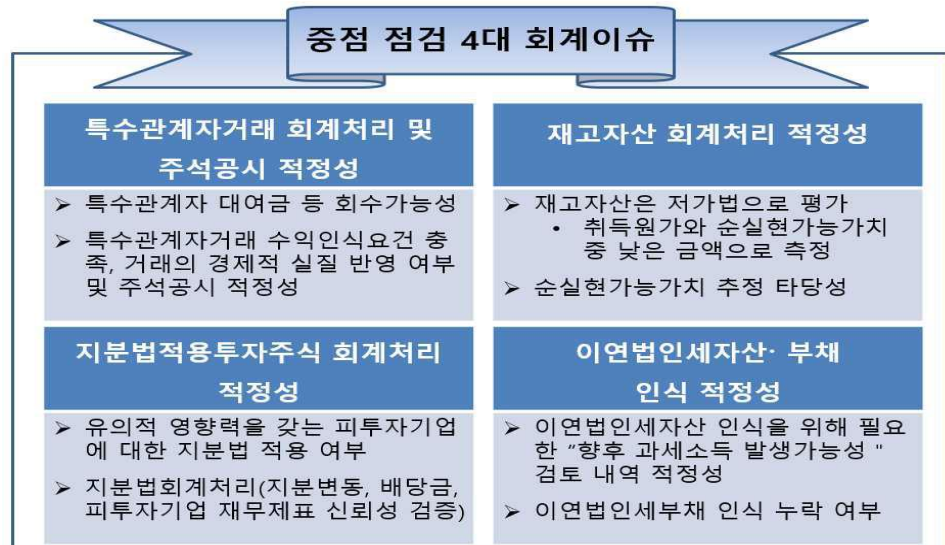
I 개요

개요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비상장회사(사업보고서 제출 대상회사 등 제외)의 재무제표 심사·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에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와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예고하고, '22년 중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중점 점검 회계이슈를 미리 예고함으로써 회사 및 감사인이 이에 대해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2022년 중간점검  
회계이슈

II 2021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2022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및  
주석공시 적정성

1.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및 주석공시 적정성

□ (관련기준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 "제 1024 호 (특수관계자 공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25 장(특수관계자 공시)", K-IFRS "제 1115 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6 장(수익)", K-IFRS "제 1109 호(금융상품)",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6 장(금융자산·금융부채)", K-IFRS "제 1001 호(재무제표 표시)", K-IFRS "제 1032 호(금융상품: 표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2 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K-IFRS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에서는 회계기간 내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채권·채무 잔액, 특수관계의 성격을 공시하도록 규정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는**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하고, 자산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대로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에서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었는지를 수익인식 조건 중 하나로 규정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에서는 기업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과 채무를 순액기준으로 결제하거나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결제할

□ (선정배경)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석공시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를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거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을 은폐·축소하려는 유인이 상존하고, 관련 거래내용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상세하게 주석으로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여 점검 필요

\* 한국공인회계사회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공시 위반시 감리결과 중조치 사례 등 안내' ('18.7.2.)와 금융감독원 '특수관계자거래 주석공시 모범사례'('13.11.11.)를 참고

회계오류 예시

- ◆ A사가 형식상 종속기업의 재고자산을 매입하여 발주처에 납품하더라도 **재고자산 거래의 위험과 효익을 실질적으로 종속기업이 부담** (A사는 단순 판매 대행)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종속기업의 매출과 매출원가임에도 동 거래금액을 A사의 매출과 매출원가로 과대계상**
- ◆ B사는 종속기업에 유상으로 공급한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 및 통제가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았음에도** 이전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 ◆ C사는 상계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특수관계자 차입금과 대표이사 대여금을상계처리하고, 관련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대표이사 대여금의 회수가 불확실함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음**

□ (선정기준) 동종업종 평균대비 거래의 대여금이 계상되어 있는 회사, 매출액 대비 특수관계자 매출·매입 규모가 큰 회사 등을 심사대상 회사로 선정

□ (회계처리 유의사항)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오류로 인해 재무제표가 왜곡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석공시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의 존재와 거래내역을 파악하고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공시해야함에 유의

- 특수관계 유무를 고려할 때에는 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 관계에도 주의
-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절히 회계처리 하여야 함에 유의  
(예. 거래 실질에 따른 총액 또는 순액 회계처리 및 수익인식요건 충족여부 판단 등)

재고자산 회계처리  
적정성

2. 재고자산 회계처리 적정성

□ (관련 기준서) K-IFRS “제 1002 호(재고자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7 장 (재고자산)”

K-IFRS 제1002호(재고자산)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재고자산)에서 재고 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저가법)으로 측정하며, 매 회계기간 말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도록 규정

<재고자산 순실현가능가치가 원가 이하로 하락할 수 있는 경우>

□ (선정배경)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고자산이 급격한 가치하락 및 진부화위험 등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지 않음으로써 순실현가능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를 당기손실에 반영하지 않아 회사 실적 및 재무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려는 유인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

회계오류 예시

- ◆ A사는 정상영업주기내에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에 대하여 저가법을 적용 하지 않아,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
- ◆ B사는 거래처가 주문 제작된 장비의 구매주문을 취소하여 실질적으로 판매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이를 순실현가능가치에 반영하지 않아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

(재고자산평가충당금) 비중이 과다(과소)한 회사, 전기 대비 재고자산평가충당금 변동비율이 큰 회사 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 선정

□ (회계처리 유의사항) 재고자산은 물리적 손상, 진부화, 판매가격하락 등으로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할 수 있는 경우 저가법을 적용하여,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회계처리 적정성  
3.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회계처리 적정성

□ (관련 기준서) K-IFRS “제 1028 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8 장(지분법)”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에서 투자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피투자기업의 주식(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취득할 때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지분변동액을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투자기업은 재무제표 작성자로서 피투자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신뢰성검증을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

□ (선정배경) 비상장기업의 경우 이연법인세 관련 회계처리기준의 복잡성으로 인해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고,

◦ 경기 침체 및 기업환경 악화에 따른 실적 부진 등으로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부채비율 감소 등의 목적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거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함에도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으려는 유인이 상존하여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

회계오류 예시

- ◆ A사는 당기말 토지의 재평가 증가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서 이와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과소계상
- ◆ B사는 계속해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이월결손금이 누적된 상황이고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낮아,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여 자본잠식금액을 축소하거나 부채비율이 낮게 산정되도록 회계처리

□ (선정기준)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증감 현황, 자산(부채) 대비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비중 및 동종업종 평균과의 비교 등을 종합하여 심사대상회사를 선정

□ (회계처리 유의사항)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비상장기업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비상장기업은 이연법인세 회계처리기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여 관련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여야 함

특히,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계처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관련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유의할 필요

\* (K-IFRS)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향후 계획

Ⅲ 향후 계획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21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사전 안내한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중점점검 회계이슈에 대해서는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 및 감사인을 대상으로 결산 및 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한편, 기준 적용·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 [붙임] 1. 비상장법인 중점 점검분야 선정내역('19년~'20년)
- 2. 연도별 감사보고서 주요 지적사례

붙임 1  
과거 중점점검사항  
(2019~2020년)

(붙임1)

**비상장법인 중점 회계이슈 선정 현황('19년~'20년)**

대상 재무제표	중점 점검 분야
2020년	①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② 수익인식(유상사급 및 총액·순액 인식 등) 회계처리의 적정성 ③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등 공시의 적정성
2019년	④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공시의 적정성 ⑤ 우발부채 주석공시의 적정성 ⑥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적정성 ⑦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붙임 2  
연도별 감사보고서  
주요 지적사례  
(2016~2020 년)

(붙임2)

**연도별 감사보고서 주요 지적사례**

유형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b>A. 당기손익, 잉여금, 자기자본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b>	11	23	22	18	20
1. 매출채권, 매출 과대(소)계상	2	6	3	3	5
2. 재고자산, 매출원가 과대(소)계상	1	2	2	1	2
3. 유형자산 과대계상	1	2	-	3	2
4. 개발비 과대계상	-	2	-	1	3
5. 이연법인세자산 과대계상	1	1	-	-	-
6. 기타의 자산 과대계상	-	1	4	1	1
7. 차입금 등 부채 누락	-	-	2	-	-
8. 미지급비용 등 부채 과소계상	1	1	-	-	-
9. 소송관련충당금 등 과소계상	-	-	-	-	1
10.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	2	1	-
11. 자산평가손실 및 감액손실 과소계상	1	-	-	-	-
12. 유가증권 및 투자유가증권 평가관련	2	4	5	2	3
13.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	2	2	-	4	2
14. 금융비용 자본화 금액 과대(소)계상	-	-	-	-	1
15. 기타손익 과대(소)계상	-	2	4	2	2
<b>B. 자산·부채 과대계상 등</b>	2	9	3	2	2
1. 자산·부채 과대(소)계상	-	3	-	-	-
2. 매출·매입 과대(소)계상	2	6	3	2	-
3. 유동·비유동항목간 계정재분류	-	-	-	-	2
<b>C. 주식 미기재</b>	10	12	9	3	3
1. 특수관계자 등과의 거래내역 등	2	6	3	-	1
2.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6	6	6	2	2
3. 투자유가증권 관련	1	-	-	-	-
4. 기타 주식 미기재	1	-	-	1	-
<b>D. 계정과목 분류 오류 등</b>	1	2	-	2	2
<b>E. 법규 위반사항</b>	11	5	1	2	5
<b>합 계</b>	35	51	35	27	32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2021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

**2021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 행정안전부는 2021.8.11 '2021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8 월 31 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통지의무 신설 (안 지방세기본법 § 50③)**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진행상황 등 통지 의무 ○ 경정청구 2개월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진행상황 및 불복절차 안내* 통지 * 경정청구 2개월 이내에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 가능

<개정이유>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알 권리 강화

<적용시기> 2022. 1. 1. 이후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

**2.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 신설 (안 지방세기본법 § 82 조)**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세무조사 대상선정 ○ 정기선정 - 신고성실도 분석 불성실 혐의 - 4년 이상 비조사 중 검증 필요 - 무작위 추출 표본조사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필수	<input type="checkbox"/> 세무조사 대상선정 합리화 ○ (현행과 같음)
○ 수시선정 -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 미이행 - 구체적인 탈세제보 - 명백한 신고 탈루·오류 혐의 - 납세자의 세무조사 신청	○ 수시선정 사유 신설 「     (현행과 같음) 」
- <신 설>	- 무자료·위장·가공 거래 혐의 - 납세자의 금품 제공·알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단기 법인 등 정기선정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훈령 또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경우 등

<개정이유> 공정과세 실현 및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선정 합리화

<적용시기> 2022. 1. 1. 이후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분부터 적용



3.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합리화 (안 지방세기본법 §62①)

현 행	개 정 안
<p>□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정청구 시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 계산</li> <li>○ 사유별로 법률에서 각 호를 두어 직접 규정</li> </ul>	<p>□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정청구 시에도 납부일 등*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 계산</li> <li>* 종전 6호 삭제 → 1호 및 5호 적용</li> <li>○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사유별로 규정 신설</li> <li>※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도 시행령에 규정</li> </ul>
<p>&lt; 법 제62조제1항 &gt;</p> <p>1호) 착오납부, 이중납부, 경정·취소 : 납부일 (6호,7호제외)</p> <p>2호) 연납 자동차세 일할계산 환급 : 이전등록일, 양도일, 사용폐지일 ※ 납부 후 양도한 경우 등은 납부일</p> <p>3호) 적법하게 납부 후 감면 발생 : 감면 결정일</p> <p>4호) 적법납부 후 법령·조례개정 : 법령 또는 조례 시행일</p> <p>5호) 환급세액 신고, 잘못된 신고 경정 : 신고일 30일 지난 날(6호제외) ※ 무신고 환급세액은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p> <p>6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 : 경정청구일 ※ 납부일이 경정청구보다 늦은 경우 납부일</p> <p>7호) 세무서장 통보 지방소득세 등 : 환급결정일 30일 지난 날</p>	<p>&lt; 영 제43조제1항 신설 &gt;</p> <p>1호) 착오납부, 이중납부, 경정·취소 : 납부일 (7호제외)</p> <p>2호) (현행과 같음)</p> <p>3호) (현행과 같음)</p> <p>4호) (현행과 같음)</p> <p>5호) 환급세액 신고, 잘못된 신고 경정 : 신고일 30일 지난 날</p> <p>&lt; 삭 제 &gt;</p> <p>6호) (종전 제7호와 같음)</p>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강화 및 조세 법률체계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2022. 1. 1. 이후 지방세를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개선 (안 지방세법 §10, §10의 2~ 6 신설)

현행		개정안	
□취득세 과세표준 ○ 과세표준을 "신고한 가액" 적용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신고가액이 적은 경우 : 시가표준액 - 유상취득 : 사실상 취득가격 일부인정 - 무상취득 : 시가표준액(시가 불인정)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 개선 ○ 취득원인별로 조문체계를 명확히 함 - 유상·무상·원시·과세특례·간주취득 順 ○ 실제거래가액 신고 인정 및 무상취득 시 시가* 도입 적용 *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공매가격 등	
조항	조문 내용	조항	조문 내용
§10 ①	■ 과세표준 원칙 : 취득당시의 가액 ■ 취득당시의 가액 -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 다만 개인이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시가표준액 ※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	§10	■ 과세표준 원칙 : 취득당시의 가액 ■ 유상취득(부동산등 승계)
②	-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 다만 개인이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시가표준액 ※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	§10-2	1) 원칙 : 사실상의 취득가격 2) 예외 : 시가표준액
③	■ 원시취득 - (원칙) 신고한 가액 - (예외) 시가표준액 ■ 개수지목변경 구조변경 취득 과표 - (원칙) 증가한 가액 - (예외) 시가표준액	§10-3	■ 무상취득(상속·증여기부) 1) 원칙 : 시가인정액 2) 예외 : 시가표준액 3) 부담부증여 : 채무 외(무상취득) + 채무액(유상취득)
④	■ 과점주주 간주취득 과표 1. 원칙 : 원가* * 법인장부상 부동산등가액 × 주주지분	§10-4	■ 원시취득(신축·중축·재축 등) 1) 원칙 : 사실상의 취득가격 2) 예외 : 시가표준액
⑤	■ 사실상 취득가격 2단계 인정 - 국가, 지자체로부터 취득 - 외국으로부터 수입 - 판결문, 법원정부 입증가격 - 공매 취득	§10-5	■ 과세표준 특례에 따른 취득 ① 차량·건설기계 취득 1) 유상 : 사실상의 취득가격 2) 무상 : 시가표준액 ② 법인 합병·분할, 대물변재 교환 양도담보 등 취득 1) 원칙 : 시가인정액 2) 예외 : 시가표준액
⑥	■ 개인 건축대수신 과표 2단계 인정 - 법인장부상 90% 입증시 인정	§10-6	■ 간주취득 ① 개수지목구조변경 1. 원칙 : 사실상의 취득가격 2. 예외 : 시가표준액 ② 과점주주 1. 원칙 : 원가* * 법인장부상 부동산등가액 × 주주지분
⑦	■ 사실상 취득가격 2단계 일부 - 실거래 및 국세조사가액 통보 신고가액보다 높은 경우 추정, 적은 경우 환급 적용 <b>없함</b>		

<개정이유> 취득원인별로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이해하기 쉽도록 과표원칙, 유상, 무상, 원시, 과세특례\*, 간주취득 順으로 구분 재편

\* 대물변제, 교환, 양도담보 및 법인의 합병·분할 등의 취득 시 세부사항을 규정

- 유상취득과 원시취득 과표를 개인·법인 모두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여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과세불형평 해소

-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을 적용하여 세부담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 대국민 홍보, 신고납부시기 및 시가자료 시스템 구축을 고려, '23년부터 시행 예정

5. 증여 등 무상취득 시 취득세 납부기한 연장 (안 지방세법 §20④)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취득세 납부기한 <input type="checkbox"/> 납부기한 : 60일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 실종 :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신 설> ※ (예외)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각각 9개월이내	<input type="checkbox"/> 무상취득시 신고·납부기한 연장 <input type="checkbox"/> 납부기한 : 60일이내 - (좌 동) - (좌 동) - 무상취득(증여 등)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b>3개월이내</b> ※ (예외)규정은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에 대한 "시가인정액" 제도 도입시, 시가 산정에 따른 소요기간 및 국세\*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 기한을 일치할 필요

\* (상증세법 §68)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함

<적용시기>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 "취득세 과표개선"('23년부터 시행 예정)과 연관된 규정으로서 동시 시행 필요

6. 시가인정액 수정신고시 가산세 부과 제외 (안 지방세법 §21③)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시가인정액 수정신고시 가산세 부과 제외 <input type="checkbox"/> (대상) 당초 기한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신고의무 이행) <input type="checkbox"/> (금액) 수정신고 시가인정액에서 당초 신고액을 차감한 금액 <input type="checkbox"/> (요건) 납세자가 수정신고 또는 지자체장의 직권부과시

<개정이유> 무상취득 및 법인 합병·분할 등의 과세표준 특례규정(지방세법 개정안 §10)에 따라 당초 신고기한 내에 "시가인정액"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 당초 신고한 시가인정액과 다른 시가인정액으로 수정신고시 가산세 제외하여 세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및 납세자의 불필요한 세부담 방지

<적용시기>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 "취득세 과표개선"('23년부터 시행 예정)과 연관된 규정으로서 동시 시행 필요

**7.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안 지방세법 §101, §103 의 28)**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기간 <input type="checkbox"/> 결손금을 직전 과세연도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하여 직전 과세연도에 납부한 지방소득세 환급	<input type="checkbox"/>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기간 한시 확대 <input type="checkbox"/> '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으로 확대

<개정이유>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적용시기> '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하여 적용

**8. 토지 양도시 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안 지방세법 §103 의 3, §103 의 31)**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input type="checkbox"/> 기본세율 : 0.6~4.5%(분양권은 6%) <input type="checkbox"/> 단기보유 토지 - 1년 미만 : 5%(주택, 입주권·분양권은 7%) - 1년 이상 2년 미만 : 4%(주택, 입주권·분양권은 6%) <input type="checkbox"/> 비사업용 토지 : 기본세율 + 1%p <input type="checkbox"/>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input type="checkbox"/> 비사업용 토지 : 양도소득의 1% 추가 납부	<input type="checkbox"/>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단기보유 토지 - 1년 미만 : 7%(삭 제*) * 주택·입주권·분양권 별도 규정 불요 - 1년 이상 2년 미만 : 6%(삭 제*) * 주택·입주권·분양권 별도 규정 불요 <input type="checkbox"/> 비사업용 토지 : 기본세율 + 2%p <input type="checkbox"/>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input type="checkbox"/> 비사업용 토지 : 양도소득의 2% 추가 납부

<개정이유> 투기적 토지거래의 기대수익 축소를 통한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단기보유 토지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지방소득세 강화

\*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21.3.29.) 관련 국세 동반 개정사항

<적용시기>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9. 국세 환급통보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개선 등 (안 지방세법 §103 의 59)**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지방소득세 관련 국세의 통보 및 환급 <input type="radio"/> 국세 경정 통보 시 감액경정은 제외  <input type="radio"/> 소득세 환급 통보 시(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의무  <input type="radio"/> <신 설>	<input type="checkbox"/> 지방소득세 관련 국세의 통보 및 환급 <input type="radio"/> 국세 경정 통보 시 감액경정도 포함 ※ 납세자 권리 보장 강화, 실무상 감액경정도 통보대상 포함 중 <input type="radio"/> 소득세·법인세 환급 통보 시(개인·법인) 지방소득세 환급 의무 <input type="radio"/> 국세 환급 통보 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다시 기산되도록 규정

<개정이유> 현행 규정상 국세 환급이 있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지방소득세 환급에 어려움이 발생

<적용시기> '22.1.1. 이후 세무서장 등이 법인세·소득세를 환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0. 법인 보유 주택 세부담상한을 상향 조정 (안 지방세법 §11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주택 세부담 상한율 <input type="radio"/> 3억이하 105%, 3~6억원 110%, 6억초과 130% ※ 토지·건축물은 가격 관계없이 150%	<input type="checkbox"/> 법인보유 주택은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b>150%</b> 적용

<개정이유> 부동산 정책 및 보유세 체계 일관성 차원에서 법인 소유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상한을 정상화

<적용시기> 이 법 시행 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1. 지방세 특례 원칙상 일몰주기 규정 신설 (안 지특법 §2의 2②)**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지방세 특례 원칙 <input type="radio"/> (고려사항) 공공성 등 8개 지표 <input type="radio"/> (일몰기한) 규정 無	<input type="checkbox"/> 지방세 특례 원칙 <input type="radio"/> (고려사항) 좌동 <input type="radio"/> (일몰기한) 3년 이내 원칙 법제화

<개정이유> 지방세 특례의 주기적인 타당성 평가 기반 마련  
 <적용시기>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2. 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및 규정 보완 (안 지특법 § 531 ①, ②, ④, ⑤)**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input type="radio"/> 취득세 면적별 50%~100% <input type="radio"/> 재산세 면적별* 25%~100% * 60㎡ 이하 : 도시지역분 포함 ※ 최소납부세제 적용 <input type="radio"/> 일몰기한 : '21.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input type="radio"/> (현행과 같음) <input type="radio"/> 재산세 면적별 25%~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input type="radio"/> 일몰기한 : '24.12.31.
<input type="checkbox"/> 오피스텔 감면적용 가액기준 <input type="radio"/> 건축물* 시가표준액 *「지방세법」§4① - 4억원 이하(수도권) - 2억원 이하(비수도권)	<input type="checkbox"/> 오피스텔 감면적용 가액기준 합리화 <input type="radio"/>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지방세법」§4(①·②) - 4억원 이하(수도권) - 2억원 이하(비수도권)
<input type="checkbox"/> 추정요건 <input type="radio"/>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input type="checkbox"/> 추정요건 합리화 <input type="radio"/>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또는 임대 의무기간 내 매각·증여 ※ 취득세 추정요건과 일치

<개정이유> 서민주거 안정 및 조세 합리성 제고  
 <적용시기> 이 법 시행('22.1.1.) 이후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거나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부터 적용

1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감면 연장 및 규정 보완 (안 지특법 § 31 의 3 ①·②)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장기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input type="radio"/> 재산세 면적별* 50%~100% * 60㎡ 이하 : 도시지역분 포함 ※ 최소납부세제 적용 <input type="radio"/> 일몰기한 : '21.12.31.  <input type="checkbox"/> 오피스텔 감면적용 가액기준  <input type="radio"/> 건축물* 시가표준액 *「지방세법」§4① - 4억원 이하(수도권) - 2억원 이하(비수도권)  <input type="checkbox"/> 추정요건 <input type="radio"/>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input type="radio"/> 재산세 면적별 50%~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input type="radio"/> 일몰기한 : '24.12.31.  <input type="checkbox"/> 오피스텔 감면적용 가액기준 합리화  <input type="radio"/>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지방세법」§4(①·②) - 4억원 이하(수도권) - 2억원 이하(비수도권)  <input type="checkbox"/> 추정요건 합리화 <input type="radio"/>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또는 임대 의무 기간 내 매각·증여 ※ 취득세 추정요건과 일치

<개정이유> 서민주거 안정 및 조세 합리성 제고

<적용시기> 이 법 시행('22.1.1.)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거나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부터 적용

14.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요건 정비 보완 (안 지특법 § 79①~③)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법인의 지방이전 감면 <input type="radio"/> 취득세·등록면허세 100%, 재산세 5년간 100%.3년간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input type="radio"/> 일몰기한 : '21.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요건 <input type="radio"/> 과밀억제권역 또는 대도시* → 대도시 외 이전 *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input type="radio"/> (현행과 같음)  <input type="radio"/> 일몰기한: '24.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요건 정비 <input type="radio"/> 대도시 → 과밀억제권역 외 이전

<개정이유>

-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고용 창출
- 감면요건 통일 및 명확화

<적용시기>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5.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요건 정비 보완 (안 지특법 § 80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공장의 지방이전 감면 <input type="radio"/>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3년간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input type="radio"/> 일몰기한 : '21.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요건 <input type="radio"/> 대도시* → 대도시 외 이전 *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input type="radio"/> (현행과 같음)  <input type="radio"/> 일몰기한: '24.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요건 정비 <input type="radio"/> 대도시 → 과밀억제권역 외 이전

<개정이유>

-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고용 창출
- 감면요건 명확화

<적용시기>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6.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대상 신설 및 연장 (안 지특법 §46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input type="radio"/> 기업규모별 지방세 감면 - 중소기업 : 취득세 60%, 재산세 50% - 중견기업 : 취득세 35%, 재산세 35%  - 대기업* : 취득세 35%, 재산세 35%  * 과밀억제권역 外 한정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취득세·재산 세10%p 감면 추가  <input type="radio"/> 일몰기한 : '22.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 대상 신설 및 연장 <input type="radio"/> 기업규모별 지방세 감면 - (현행과 같음) - 중견기업 : 취득세 35%, 재산세 35% <b>※ 초기중견기업의 경우 취득세·재산세            15%p 추가 감면</b>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input type="radio"/>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초기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확대

<적용시기>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개정이유>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자기시정 기회 확대

최신 세무예규  
판례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의 시가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개별 자산·부채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 89 조에 따라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15, 2021.08.09)

(사실관계)

- A법인은 B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던 중
  - B법인이 20XX.XX.XX에 OO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였고, 동시에 분할사업부문이 C법인에 합병되어
  - C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C법인의 미국 소재 완전모회사의 발행주식을 분할합병대가로 A법인에게 지급하였음.

- 본건 분할합병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적격분할합병임.

(질의내용)

- (질의1)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 산정 방법
- (질의2) 분할법인의 양도손익 및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소득 계산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로 지급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외국 소재 모회사 발행주식의 시가 산정 시점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의 시가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개별 자산·부채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법인의 양도손익 및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합병대가로 지급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시가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가액(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조특령 §2⑤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조세특례-559, 2021.08.19)

(사실관계)

- '14.4.14. 중기령에서 중소기업기준을 매출액·종업원·자본금 기준에서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통일하고, 졸업기준도 자산총액 5천억 기준으로 단일화 하였음
- '15.2.3 조특법상 중소기업 기준도 개정된 중기령 기준을 반영하여 '15년부터 중소기업요건을 간소화하였음
- 질의법인은 정보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 '08년 매출액이 1천억을 초과하여 조특령§2②\*에 따라 '11년까지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받은 바 있음

\* 중소기업이 규모의 증가등으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는 중소기업 유예적용

- 유예기간 종료 이후부터 각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조특령 §2②후단)하게 되는데,
  - '14 과세연도는 개정 전 요건인 상시종업원수 기준 이하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나,
  - '15 과세연도는 개정된 규정, 종전규정 모두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 '14.4.14. 중기령 및 '15.2.3. 조특령 개정으로 '15년부터 개정된 중소기업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14년은 종전기준에 의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15년은 종전·개정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5과세연도에 대하여 조특령§2⑤(중기령 기준변경에 따른 유예제도)에 의해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별표1 및 별표2(이하 “중소기업기준”)가 개정되지 않았을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중소기업기준의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 업 무 소 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li> <li>▪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li> <li>▪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li> <li>▪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li> <li>▪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li> <li>▪ 조직, 인사 전략 / HR</li> <li>▪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li> <li>▪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li> <li>▪ M&amp;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li> <li>▪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li> <li>▪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li> <li>▪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li> <li>▪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li> <li>▪ PI / CRM / Risk Management 등</li> </ul> |
|--|---|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kr](mailto:secretary@crowe.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i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